

Confidential

# KIRAEDEU 교육과정 판매위탁 계약서

## [대리점]

상호: 렌탈하는 사람

주소: 서울시 강동구 봉암로 550 일크루빌딩 508

대표이사 노정인

## [회사]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  
스하이엔드타워3차 304호

대표이사 유동주



2020년 12 월 10 일

# KIRAEDU 교육과정 판매위탁 계약서

000000000(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회사’가 취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판매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주요계약내용

회사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기술원(kiraedu-키라에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계약업무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판매 위탁 업무
수수료 지급 기준	교육비 입금 분
수수료 지급 방법	전체 교육비 * 수수료 지급율(세금 포함)
수수료 지급율	50% : 영업 + 교육상담 + 계약의 업무 20% : 영업의 업무
수수료 지급일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수수료 정산 내역서 지급일	매월 15일(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수수료 정산 방법	부가가치세(10%) 또는 사업소득세(3.3%) 중 선택
부정훈련에 대한 규정	산업인력공단 부정훈련 판정 시 : 영업수수료 반환 및 손해 배상(수수료 5배)청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 소명자료제출 및 영업 수수료 지급 중지
부정훈련 예방 조치	부정 훈련 예방 교육 이수
분쟁의 처리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 운영
첨부서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점 영업사원 명부 1부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각 1부(대표자 및 영업사원) 입금 계좌 사본 1부

기타 본 계약의 상세한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의 ‘판매위탁 일반조건’에 명시된다.

‘대리점’과 ‘회사’는 주요 계약내용 및 ‘판매위탁 일반조건’에 동의하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판매위탁 일반조건

##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대리점’과 ‘회사’의 본 계약 체결은 ‘회사’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대리점’의 영업이 양당사자의 이익추구에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원칙

- ‘대리점’과 ‘회사’는 대등한 지위에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신뢰와 협조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대리점’과 ‘회사’는 상법, 고용노동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 규정, 지침 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조 : 계약의 내용

- 본 계약에 의거하여 ‘대리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리점’과 ‘회사’는 각각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그 영업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조토록 한다.
  - 1호의 교육서비스는 ‘회사’가 취급하는 교육과정 및 그에 수반하는 서비스이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사업주 환급과정’이라 한다.) 및 사업주 위탁훈련 인터넷 원격과정, ‘회사’가 운영하는 비환급과정(이하 ‘비환급과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대리점’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영업을 진행한다.
  - ‘대리점’의 영업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수료율 관리의 주체는 ‘회사’이며, ‘대리점’은 수료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회사’는 ‘대리점’의 성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본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
  - ‘대리점’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부정훈련예방교육 및 영업자 간담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대리점’과 ‘회사’의 상호 합의에 따르고, 이를 별도로 문서화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 제 4 조 : 영업 수수료의 산정 기준

- 본 계약의 영업수수료는 ‘대리점’의 판매 위탁 행위로 진행된 건에 한하여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비에 대하여 정해진 수수료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사업주 환급 과정의 수수료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시행 2019. 1. 22.]에 따라, 사업주 자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세금 포함 금액)  
영업수수료 = {사업주 자부담금 + 정부지원금(최종환급금액)} \* 영업 수수료율



3

4

# 판매위탁 일반조건

3. '대리점'은 사업주 자부담금을 개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영업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대리점'의 판매위탁행위로 진행된 건(영업 + 교육상담 + 계약) : 50%
  - 2) '대리점'의 소개 행위로 진행된 건(영업) : 20%
5. 영업 수수료의 정산 방법은 부가가치세(10%) 또는 사업소득세(3.3%) 원천 징수의 방법 중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다.
6. 제2항의 사업주 자부담금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영업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 영업수수료의 지급 시기

1. '회사'는 '대리점'에게 매월 20일(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에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업주환급과정 교육비와 비환급과정 교육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사업주 환급과정의 교육비에 대한 영업수수료는 사업주 자부담금과 수강기간 종료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금되는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한 이후에 합산하여 정산·지급하도록 한다.
2. '회사'는 '대리점'에게 매월 20일 지급될 수수료 정산자료를 해당월 15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4

## 제 6 조 : 손해의 배상

1. '대리점' 또는 '회사'는 계약의 상대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리점'과 '회사'는 사전 합의나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상대방에게 사업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3. 정부환급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공단이 부정행위(대리수장, 모사답안 등 교육진행 중 부정행위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라 판정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의 모든 수수료 지급을 중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및 수수료 환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손해배상 청구액 :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 5배
  - 2) 수수료 환수 : 기지급한 영업수수료 전체
4.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회사'는 '대리점'을 통해 피교육회사 사업주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대리점'은 소명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5

# 판매위탁 일반조건

5. ‘대리점’의 부정 의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4항에 의한 조사가 진행하는 중이라도 ‘회사’는 상대방에게 수수료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7 조 : 부정 훈련 예방을 위한 조치

1. ‘대리점’은 부정훈련예방교육 등 ‘회사’가 제공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대리점’은 ‘회사’에 영업조직에 포함된 모든 영업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8 조 : 계약의 해지

1. ‘회사’와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에 의한 통보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회사’ 또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으로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조세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에 의한 통보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리점’이 교육서비스의 구매목적과 달리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켜 ‘회사’의 가격, 판매, 유통, 영업, 광고, 서비스 정책 등을 교란시키는 경우
  - 2) ‘대리점’이 ‘회사’의 동의 없이 대리점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3) 3개월간 거래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할 경우
  - 4) 기타 일반 상거래 관행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회사’ 또는 ‘대리점’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면에 의한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9 조 :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단위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대리점’과 ‘회사’간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해지의 경우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계약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5

21

# 판매위탁 일반조건

## 제 10 조 : 비밀 준수 의무

본 계약 이후 습득한 양당사자의 기술 및 영업권 등 모든 내용은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 11 조 : 분쟁의 처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별첨 ]

- #1. 윤리경영서약서
- #2. 대리점 영업사원 명부
- 이상 -

6

27

confidential

confidential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별첨 #1]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이하 ‘회사’라 한다)의 교육과정 위탁판매자로써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제반 규칙을 지키고 회사의 윤리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고 어떠한 부정, 비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부정·비리 등 비윤리 행위를 제의 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겠습니다.
4. 본인은 불공정 거래, 부정·비리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한 감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5.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6. 본 서약 내용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하며, 이외 사항은 회사의 윤리경영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20년 12 월 10 일

서 약 자

대리점명 : 전열하는 사람들

직위 : 대표

성명 : 노정인 (서명)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기술원 대표 귀중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 [별첨 #2] 대리점 영업사원 명부

구분	영업자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연락처	이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onfidential



6

b2



##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

등록번호 : 309-16-01057

상호 : 렌탈하는 사람들

성명 : 노정인 생년월일 : 1989년 05월 14일

개업연월일 : 2018년 11월 29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7길 32, 102동 201호(월계동, 중앙빌라)

사업의종류 : 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발급사유 : 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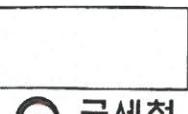
공동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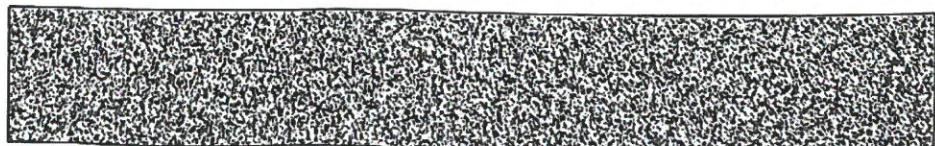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8년 12월 05일

노원세무서장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B**

예금주

노정인님

예금종류

입출금통장

계좌번호

3333-04-4842278

개설일

2017.09.05

위와 같이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카카오뱅크



주민등록증

노정인(盧正仁)

890514-10711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7길  
32, 102동 201호 (월계동  
중앙빌라)

2018. 8. 2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